2019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20.01.06. (월) 16:30

☐ **장 소 :** M1 310 교무회의실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참석위원**

○ 재적위원 (6인) : 김두년 총장(위원장), 이홍찬 총무처장, 김형수 기획처장, 조성훈 기획팀장, 이정미 교수(경영학과), 구자룡(외부전문가)

○ 참석위원 (4인) : 김두년 총장(위원장), 이홍찬 총무처장, 김형수 기획처장, 조성훈 기획팀장

○ 참석직원 (1인) : 황금진 재무회계팀장 직무대행(간사)

☐ **회의순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회의안건

○ 폐회

☐ **회의내용**

○ **성원보고 · 개회선언**

간사는 기금운용심의회 재적위원 6인 중 4인이 참석하여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위원장(김두년 총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회의안건 : 임의특정목적적립금 목적 및 용도 설정에 관한 심의**

위원장은 간사에게 2019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는 2014회계연도부터 교직원 및 외부인들이 목적없이 기부하는 발전기금을 임의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해왔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의기타적립금 계정과목에서 임의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 및 용도를 지정해야 됨을 설명하다.

간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이에 따라서 발전기금을 모금한 홍보팀에서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의특정목적적립금 목적 및 용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음을 설명하다.

· 목적 : 학생복지기금
· 대상 : 재학생
· 세부용도
  1) 학생편의시설_학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 학생기구실, 학생휴게실, 건강관리센터, 스터디룸, Cafe, 서점, 학생식당, 매점, 체육시설(천연잔디구장, 수영장,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휘트니스 센터 등)
  2) 학습지원시설_도서관, 동아리, 회의실 등
  3) 공식적인 학교행사 및 학생활동

위원(기획처장)은 학생들이 학생지원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고, 특히 이번에 그린하우스에 공동취사장을 만든 사례는 학생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발전기금이 학생복지, 학생편의시설에 대한 재원으로 확보가 되면 학생들의 만족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목적인 '학생복지기금'은 적절하다고 동의하다.

위원(기획처장)은 간사에게 기금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다.

간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따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승인(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은 지정기부금에 대한 처리에 대해 질의하다.

간사는 목적이 정해진 지정기부금은 해당 부서에서 홍보팀에 사용 승인 요청하고 총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임의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은 참고자료에 있는 적립금 명세서 상에 기타적립금(임의특정목적적립금)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참고자료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5서식] <개정 2016. 4. 20.>

적립금 명세서 (2019.11.30. 기준)

(단위 : 원)

구분	전기이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금 액	적립재원	금 액	사용내역	
임의적립금						
연구적립금	519,824	6,167	이자수익			525,991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22,380,546	379,035	이자수익			22,759,581
퇴직적립금	27,121,000		이자수익			27,121,460
기타적립금 (특정목적적립금)	226,457,253	84,841,523	이자수익, 기부금수입			311,298,776
(예시)체육기금						
복지기금						
.....						
적립금 합계	276,478,623	85,226,725				361,705,808

※ 작성방법

1. 적립재원에는 기부금수입, 법인전입금, 감가상각비상당액의 등록금회계전입금, 이자수익, 용도변경(대체증가) 등으로 기재
2. 사용내역에는 건축비충당, 연구비지급, 장학금지급, 퇴직금지급, 용도변경 등으로 기재
3. 기타적립금의 경우 용도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
4. 적립재원 내역 및 사용내역이 많은 경우 별도의 명세를 첨부할 수 있음.

간사는 참고자료는 매회계연도 결산서 상 부속명세서로 포함되는 적립금 명세서이며, 임의특정목적적립금 목적이 정해지면 *(예시)체육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명시가 됨을 설명하고 현재까지는 명시가 되지 않고 기타적립금(특정목적적립금)에 금액만 표시되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 후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의 목적을 학생복지기금으로 설정하는데 의결을 요구하자 참석위원 전원은 동의하다.

위원장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결사항**

·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의 목적 : 학생복지기금
· 대상 : 재학생
· 세부용도
  1) 학생편의시설_학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 학생기구실, 학생휴게실, 건강관리센터, 스터디룸, Cafe, 서점, 학생식당, 매점, 체육시설(천연잔디구장, 수영장,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휘트니스 센터 등)
  2) 학습지원시설_도서관, 동아리, 회의실 등
  3) 공식적인 학교행사 및 학생활동

간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폐회**

이상 안건 심의를 종료하고 17:30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 01. 06.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 김 두 년 (인)

위원 : 이 홍 찬 (인)

위원 : 김 형 수 (인)

위원 : 조 성 훈 (인)

위원 : 이 정 미 (인)

위원 : 구 자 룡 (인)